

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. 11. 5 선고 2024가단1721 판결 [보증채무금(시효연장)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10. 15.

판결 선고 2024. 11. 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3,370,9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. 10. 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 채권자는 원고로,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).

2. 인정 근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나우상

별지